

대구지방법원 2024. 12. 12 선고 2024가단147363 판결 [보증채무금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24. 12. 1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35,043,071원 및 그 중 34,503,156원 대하여 2024. 7. 1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.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다만, '채권자'는 '원고'로, '채무자는 '피고'로 본다).

2. 무변론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이명선

별지